

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처분사전통지(청문실시통지)

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4조의2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의 말소 처분을 위한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나, 단체 사무소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, 당사자는 청문일자에 출석하거나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3년 4월 11일

국토교통부장관

1. 공고기간 : 2023.04.11. ~ 2023.04.25.(15일)
2. 의견제출기한 : 2023.04.26. ~ 2023.05.10.(15일)
3. 의견제출처 :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(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)
4. 당사자

연번	성명(명칭)	주 소
1	작은사랑시민교통봉사회	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10동 산74-8

5.처분사전통지(청문실시통지) 내용

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	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의 위반 - 등록단체에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					
법적근거 및 조문내용	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4조의2(등록의 말소)					
청문실시	기관명	국토교통부	부서명	교통안전정책과	담당자	이상미 서기관 성유경 주무관
	주소	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			전화 번호	044-201-3865 044-201-3866
	일시	2023년 5월 11일(목) 14시부터 16시까지(2시간)			장소	회의실 6동 651호

	주재자	소속 및 직위	국토교통부 교통정책총괄과 사무관
		성명	최효준

<청문시 유의사항>

-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, 참고인·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. 만일,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-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. 다만,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.
-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「행정절차법」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 성유경 주무관(☎044-201-3866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끝.